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춘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8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2일

발 의 자: 김춘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
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
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
김재진, 김지향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박상혁,
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
윤기섭, 이경숙, 이민석,
이병운, 이숙자, 이승복,
이희원, 임춘대, 채수지,
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
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39명)

1. 제안이유

- 도로시설물(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등)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도로시설물별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하고 그 외 도로시설물의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은 도로사업소장으로 함.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	서울 특별시도	○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	재난안전관리실장
		○ 차도관리(버스전용차로, 자전거전용도로·자전거전용차로 포함)	도로사업소장
		○ 도로시설물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제외)	자치구청장
	○ 보도관리(축구,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)		
자동차 전용도로	○ 차도 및 보도 관리(청소 포함)	재난안전관리실장	
	○ 녹지 및 가로수	재난안전관리실장	
도로 부속물	공동구	○ 공동구	재난안전관리실장
	지하보도 및 보도육교	○ 서울특별시도(자동차전용도로 포함)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(생태통로 포함)	자치구청장
	가로등·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·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재난안전관리실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도로사업소장
	나머지 도로부속물 (방호울타리·중앙분리대·과속방지시설·미끄럼방지시설·충격흡수시설·낙석방지망·절개지·도로 옹벽·방음벽·맨홀 등)	○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	자치구청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재난안전관리실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(차도 및 보도)의 나머지 도로부속물	
○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		도로사업소장	
	○ 서울특별시도(차도)의 나머지 도로부속물(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)	자치구청장	
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제외)		
	○ 서울특별시도(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)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 (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·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)	자치구청장	
	○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	도로사업소장	
교통 관리 시설	지능형 교통체계	○ 교통정보의 수집, 제어, 가공,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	도시교통실장
	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	○ 버스전용차로(중앙 및 가로변) 유·무인 단속시스템	도시교통실장
	도로표지	○ 문안검토	도시교통실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	재난안전관리실장
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	도로사업소장	
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	자치구청장	
교통 안전 시설	신호기·안전표지	○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	도시교통실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	재난안전관리실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	
		○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	도로사업소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	
	○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	자치구청장	
	○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	자치구청장	
교통	시선유도표지·시선	○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	재난안전관리실장

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	유도봉·갈매기표지·도로반사경·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, 교통섬 등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	재난안전관리실장
		○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	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제외) ○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(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·교통섬 제외,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)	
하천 시설	한강	○ 서울특별시도(보도)의 차량진입금지시설, 교통섬	도로사업소장
		○ 한강의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○ (육)갑문의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○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 ○ (육)갑문의 문짝, 권양기 시설물, 통로청소, 수문개폐	미래한강본부장 자치구청장
하천 시설	국가 및 지방 하천(한강 제외)	○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○ 빗물펌프장(유수지 포함)의 구조물,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○ 호안블록, 옹벽, 도수로,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○ 수문의 구조물·문짝·권양기 등 관련 시설 ○ 갑문의 구조물·문짝·권양기·통로청소·수문개폐 등 ○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·진출로 시설 ○ 그 밖의 하천시설	자치구청장
	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		
하수 도	공공하수처리시설	○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	차집관거	○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	하수관거	○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	자치구청장
복개 구조물	하천복개구조물	○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	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
		○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	주 기능별 설치사용자
<p>비 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</p> <p>가. 청계천 제외지(堤外地)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(開口部) 수문 : 물순환안전국</p> <p>나. 청계천로(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)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: 재난안전관리실장</p> <p>다.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</p> <p>라. <삭 제></p> <p>참고1) "차도"란 보·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.</p> <p>참고2) 도로부속물의 "절개지"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.</p>			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자를 변경 위임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(안 별표1)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 계 분 석 관	이홍래
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